



 목포시

Web Contents

2018년 06월 25일 20시 30분

목차

목차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기저귀 지원	3
조제분유 지원	3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3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3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4
신청안내	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 경감 및 아이날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6천원) 지원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61,000	20,795	2,858	22,306
2인	1,126,000	35,167	10,050	35,790
3인	1,456,000	44,898	20,093	45,603
4인	1,787,000	54,796	33,477	55,080
5인	2,118,000	65,150	52,797	65,945
6인	2,448,000	75,834	71,834	76,490
7인	2,779,000	85,191	86,967	85,882
8인	3,109,000	96,146	102,553	97,367
9인	3,440,000	105,337	115,666	106,673
10인	3,770,000	115,615	130,141	117,0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피부 기초표 적용기간 : '17.1.1 ~ '17.12.31 까지 적용

(<http://www.mokpo.go.kr>)

가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3.06%(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 신청안내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가능(영아 부모 신청 원칙)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작성)
- 조제분유 지원신청할 경우, 산모질병 증빙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사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증,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다문화가정 또는 부부 등본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계 ☎ 061-270-4264

MokPo - Si ***Web Contents***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목포